|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공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9호  국가세무총국이 제정한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을 공표하는 바이며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용역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재발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49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표  2.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서  국가세무총국  2016년 5월 6일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따른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증치세 면제 관리방법(시범시행)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이하 '국내'로 약칭)의 업체와 개인(이하 '납세자'로 통칭)에게 발생하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는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제2조 다음 각 호의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한다.  (1)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건설 용역.  공사 포괄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공사 프로젝트를 위하여 제공하는 건설 용역은 모두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건설 용역에 속한다.  (2) 공사 프로젝트의 해외 공사 감리 용역.  (3) 공사•광물자원의 해외 공사 탐사 용역.  (4)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  고객의 해외 회의•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제공하는 조직•주선 서비스는 회의•전시 현장이 해외에 있는 회의•전시 서비스에 속한다.  (5) 저장 장소가 해외에 있는 저장 서비스.  (6) 목적물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유형동산(有形動産) 임대 서비스.  (7)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라 함은 해외의 영화관•극장•비디오방 및 기타 장소에서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을 지칭한다.  국내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TV 등 무선 또는 유선 장치를 통하여 해외로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을 방영하는 것은 해외에서 제공하는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방영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8)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 관광 서비스.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와 교육•의료 서비스라 함은 납세자가 해외 현장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를 지칭한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과학기술행사, 문화행사, 문화공연, 문화시합, 체육공연,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공하는 조직•주선 서비스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에 속한다.  국내의 라디오 방송국, TV 방송국, 위성통신, 인터넷, 케이블 TV 등 매체를 통하여 해외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또는 교육•의료 서비스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문화•체육 서비스, 교육•의료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9) 수출 화물의 우정(郵政) 서비스, 인수•배달 서비스, 보험 서비스.  ① 수출 화물의 우정(郵政) 서비스라 함은 아래 서비스를 지칭한다.  i. 서신•소포 등 우편물의 해외 배송.  ii. 해외 우표 발행.  iii. 우표첩 등 우정(郵政)품의 수출.  ② 수출 화물의 인수•배송 서비스라 함은 해외로 배송되는 서신•소포의 인수•분류•배달 서비스를 지칭한다.  납세자가 수출 화물의 인수•배송 서비스를 취급하는 경우 그가 발송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모든 요금 및 가격외 비용을 면세 매출액으로 한다.  ③ 수출 화물의 보험 서비스는 수출 화물 보험과 수출 신용 보험을 포함한다.  (10)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기통신 서비스.  납세자가 해외 업체 또는 개인에게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전기통신업체를 통하여 요금을 결산하는 경우 해외 전기통신업체가 서비스 이용자이며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기통신 서비스에 속한다.  (11)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을 서비스 실제 이용자로 한 지적재산권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지적재산권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12)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물류보조 서비스(저장 서비스, 인수•배달 서비스 제외).  해외 업체가 국제운송 및 홍콩•마카오•타이완 운송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중국의 공항, 부두, 터미널, 영공, 내륙하, 해역 경유 시 납세자가 그에게 제공하는 항공 지상 서비스, 항구 부두 서비스, 화물•여객 운송 터미널 서비스, 인양•구조 서비스, 상하역•운반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물류보조 서비스에 속한다.  (13)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감증자문 서비스.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감증자문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② 국내의 화물 또는 부동산에 대한 인증 서비스, 감증 서비스 및 자문 서비스.  (14)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문기술 서비스.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전문기술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② 국내의 기상 상황, 지진 상황, 해양 상황, 환경 및 생태 상황에 대한 기상 서비스, 지진 서비스, 해양 서비스, 환경 및 생태 모니터링 서비스.  ③ 국내의 지형•지세, 지질구조, 수문(水文), 광물 자원 등에 대한 측량 제도 서비스.  ④ 국내의 도시, 향(鄕), 진(鎭)에 대한 도시계획 서비스.  (15)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거래 보조 서비스.  ①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는 세관신고 대행 서비스와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세관신고 대행 서비스와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에 속한다.  ②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는 선원 해외파견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인력자원 서비스에 속한다. 선원 해외파견 서비스라 함은 국내 업체가 본 업체의 직원인 선원을 파견하여 해외에서 해외 업체를 위하여 제공하는 선박 운전 및 선박 관리 등 서비스를 지칭한다.  ③ 납세자가 국제 노무 협력의 방식으로 해외 업체에게 제공하며 완전히 해외에서 발생하는 인력자원 서비스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인력자원 서비스에 속한다. 국제 노무 협력이라 함은 국내 업체와 해외 업체가 양 당사자간에 체결한 노무협력계약의 약정에 따라 중국 공민을 모집 및 협조하여 해외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④ 다음의 경우는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상거래 서비스에 속하지 아니한다.  i. 국내 업체 또는 개인이 서비스 실제 이용자인 경우.  ii. 국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및 자산관리 서비스, 부동산 관리 서비스, 부동산 중개 서비스.  iii.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의 경매 과정에서 제공되는 중개•대리 서비스.  iv.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의 물권 분쟁을 위하여 제공하는 법률대리 서비스.  v.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을 위하여 제공하는 안전보호 서비스.  (16) 해외 업체에게 판매하는 광고 투입지가 해외인 광고 서비스.  광고 투입지가 해외인 광고 서비스라 함은 해외에서 발표되는 광고를 위하여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를 지칭한다.  (17)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기술 제외).  다음의 경우는 해외 업체에게 판매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① 무형자산이 완전히 해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닌 경우.  ② 양도한 자연자원 사용권이 국내의 자연자원과 관련된 경우.  ③ 양도한 기초시설 자산 경영권, 공공사업 특허권이 국내 화물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④ 국내의 화물 판매, 과세대상 용역, 서비스, 무형자산 또는 부동산의 할당액, 경영권, 판매대리권, 유통권, 대리권을 해외 업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18) 해외 업체간의 화폐성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수취하는 금융서비스(국내의 화물, 무형자산 및 부동산과 관련이 없어야 함).  해외 업체간, 해외 업체와 개인간의 외화•인민폐 자금 왕래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청산, 자금결산, 금융지급, 계좌관리 서비스는 해외 업체간의 화폐성 자금 조달 및 기타 금융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직접적으로 요금을 수취하는 금융서비스에 속한다.  (19)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제운송 서비스:  ① 운송수단이 없이 운송을 수탁하는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② <국제선박운송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③ <도로운송경영허가증> 또는 <국제차량운송주행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도로운송경영허가증>의 경영범위에 '국제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④ <공공항공운송기업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경영범위에 '국제항공여객•화물운송업무'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⑤ <통용항공경영허가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거나 그 경영범위에 '공무비행'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항공운송 방식으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20) 영세율 정책에 부합되지만 간이과세 방법을 적용하거나 영세율 적용의 포기와 세금면제의 선택을 성명한 다음 과세대상 행위 :  ① 국제운송 서비스.  ② 우주수송 서비스.  ③ 해외 업체에게 제공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다음의 서비스 :  i. 연구개발 서비스;  ii. 에너지성과계약 서비스;  iii. 설계 서비스;  iv. 라디오•영화•TV 프로그램(작품) 제작 및 발행 서비스;  v. 소프트웨어 서비스;  vi. 전자회로 설계 및 테스팅 서비스;  vii. 정보시스템 서비스;  viii. 업무절차 관리 서비스;  ix. 해외 아웃소싱 서비스.  ④ 해외 업체에게 양도되어 완전히 해외에서 소비되는 기술.  제3조 납세자가 국내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 내의 업체 또는 개인에게 서비스•무형자산을 판매하는 행위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 2016년 4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철도운송 및 우정업을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3]106호)의 첨부4 및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영상물 수출 서비스에 증치세 영세율 정책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통지>(재세[2015]118호)에 규정한 세금면제 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계약이 만기되기 전에 계속해서 세금면제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5조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2조에 열거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9)호, 제(20)호를 제외하고 반드시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공중비행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중국민용항공국의 운항계획 또는 중국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중국방문 비행기록을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한다.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공중비행 관리 서비스 제외)를 제공함에 있어 중국 민용항공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 항공운송기업 상주대표기구와 체결한 서면계약은 서비스 이용자와 체결한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에 속한다. 외국 항공운송기업이 임시적으로 중국 방문 비행을 함에 있어 다국적 서비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중국 민용항공국 청산센터의 임시 중국방문 비행기록을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한다.  시공 현장이 해외에 있는 공사 프로젝트의 하도급업체는 공사 프로젝트가 해외에 있다는 증명, 발주업체와 체결한 건설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등 서류를 다국적 서비스 판매 서면계약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해외 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함에 있어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의 판매수입 전액을 해외로부터 취득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증치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외로부터 취득한 수입으로 간주한다.  (1) 납세자가 외국 항공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중국 민용항공국 청산센터, 중국항공결산유한책임회사 또는 중국 민용항공국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외국 항공운송기업 상주대표기구로부터 취득한 수입.  (2) 납세자와 해외 관련 업체간에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국내 제3자 결산회사로부터 취득한 수입. 상기의 제3자 결산회사라 함은 다국적 기업그룹 내 계열사 자금 집중 운영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자금결산회사를 지칭하며 재무회사, 통합자금관리센터(Cash pooling), 자금결산센터 등을 포함한다.  (3) 납세자가 외국 선박운송기업에게 물류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외국 선박운송기업이 특정한 국내 대리회사와의 결산을 통해 취득한 수입.  (4)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7조 납세자에게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여 증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단독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고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정확하게 산정하여야 하며 그 면세수입에 대하여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납세자가 수출 화물 인수•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공식에 따라 공제 불가 매입세액을 산정한다 :  공제 불가 매입세액 = 당기 구분 불가한 전부 매입세액 × (당기 간이과세 방법 적용 항목의 매출액 + 증치세 면제 항목의 매출액 - 수출 화물 인수•배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외 협력업체에게 지급한 비용) ÷ 당기 전부 매출액  제8조 납세자에게 증치세를 면제하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제2조 제(20)호에 열거된 서비스를 제외하고 최초로 세금을 면제받은 납세신고기한 내에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신고징수기간 이후의 기타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비안(備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표>(첨부 1);  (2) 이 방법 제5조에 규정한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 원본과 복사본;  (3) 이 방법 제2조 제(1)호~제(8)호 및 제(16)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장소가 외국에 있다는 증명서류 원본과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이 방법 제2조에 규정한 국제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관련 업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해외 업체에게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구매자의 기구 소재지가 해외에 있다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가세무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9조 납세자에게 제2조 제(20)호에 열거된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로 세금을 면제받은 납세신고기한 내에 또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계획단열시의 국가세무국이 규정한 신고징수기간 이후의 기타 기한 내에 관할 세무기관을 방문하여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비안(備案)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증치세 면제•공제•환급 또는 면제•환급 수속을 처리하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비안(備案)한 <증치세 영세율 적용 포기 성명서>(첨부 2);  (2) 해당 과세대상 행위에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면제•공제•환급 또는 면제•환급 수속을 이행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원시증빙.  제10조 이 방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제출하는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서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정대표인(책임자)가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이 방법 제8조에 규정한 해외 서류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복사본과 원본이 일치함'라는 문구가 표시되었고 법정대표인(책임자)이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복사본만 제출할 수 있다. 해외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정대표인(책임자)이 서명하였거나 업체의 공인이 날인된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대하여 현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해외 공증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납세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납세자가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수속을 이행하는 경우 관할 세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상황 별로 처리하여야 한다.  (1) 비안(備案)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 납세자에게 고지하고 정정을 허용하여야 한다.  (2) 비안(備案)서류를 완비하지 못하였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석에서 보정이 필요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비안(備案)서류가 완비되었고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을 거친 비안(備案)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 납세자의 비안(備案)을 접수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원본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4) 관할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보정한 비안(備案)서류가 여전히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납세자의 해당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을 불(不)접수하고 모든 제출서류를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관할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을 접수하거나 불(不)접수함에 있어 본 기관의 전용도장이 날인되었고 일자가 기재된 서면증빙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존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계약이 변경되었거나 다국적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 관련 상황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변화 발생 후에도 여전히 이 방법 제2조에 규정한 세금면제 범위에 속하는 경우 납세자는 관할 세무기관에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납세자는 이 방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요구하는 각 항의 서류를 온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세무기관의 후속 관리 과정에서 상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정책을 누릴 수 없으며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보충납부하여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납세자는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은 후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금면제 적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실제 경영상황이 더 이상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세금면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규정에 따라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자의 실제 경영상황이 이 방법에 규정한 세금면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사기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면제받거나 세금면제 적용 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후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세금을 감면한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세무기관은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증치세 면제 관리 업무를 고도로 중시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비안(備案)서류를 기반으로 서류분석, 일상검사, 중점검사 등 방식을 취하여 납세자의 업무 진실성에 대한 확인 업무를 강화하여야 하며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현행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8조 납세자에게 홍콩•마카오•타이완 관련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방법이 시행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4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세금면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미 이행한 경우 다시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 납세자에게 이 방법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 부합되는 세금면제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보충 이행하여야 하며; 세금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국적 서비스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후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미래에 발생하는 세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이미 발행한 경우 전체 부수의 영수증을 모두 회수한 후에야 다국적 과세대상 행위 세금면제 비안(備案) 수속 이행이 가능하다. |  |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6年第29号  国家税务总局制定了《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现予以公布，自2016年5月1日起施行。《国家税务总局关于重新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服务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49号）同时废止。  　　特此公告。  附件：  1.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表  2.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  国家税务总局  2016年5月6日  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增值税  免税管理办法（试行）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的单位和个人（以下称纳税人）发生跨境应税行为，适用本办法。  　　第二条 下列跨境应税行为免征增值税：  　　（一）工程项目在境外的建筑服务。  　　工程总承包方和工程分包方为施工地点在境外的工程项目提供的建筑服务，均属于工程项目在境外的建筑服务。  　　（二）工程项目在境外的工程监理服务。  　　（三）工程、矿产资源在境外的工程勘察勘探服务。  　　（四）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为客户参加在境外举办的会议、展览而提供的组织安排服务，属于会议展览地点在境外的会议展览服务。  　　（五）存储地点在境外的仓储服务。  　　（六）标的物在境外使用的有形动产租赁服务。  　　（七）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的播映服务。  　　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播映服务，是指在境外的影院、剧院、录像厅及其他场所播映广播影视节目（作品）。  　　通过境内的电台、电视台、卫星通信、互联网、有线电视等无线或者有线装置向境外播映广播影视节目（作品），不属于在境外提供的广播影视节目（作品）播映服务。  　　（八）在境外提供的文化体育服务、教育医疗服务、旅游服务。  　　在境外提供的文化体育服务和教育医疗服务，是指纳税人在境外现场提供的文化体育服务和教育医疗服务。  　　为参加在境外举办的科技活动、文化活动、文化演出、文化比赛、体育比赛、体育表演、体育活动而提供的组织安排服务，属于在境外提供的文化体育服务。  　　通过境内的电台、电视台、卫星通信、互联网、有线电视等媒体向境外单位或个人提供的文化体育服务或教育医疗服务，不属于在境外提供的文化体育服务、教育医疗服务。  　　（九）为出口货物提供的邮政服务、收派服务、保险服务。  　　1.为出口货物提供的邮政服务，是指：  　 （1）寄递函件、包裹等邮件出境。  　 （2）向境外发行邮票。  　 （3）出口邮册等邮品。  　　2.为出口货物提供的收派服务，是指为出境的函件、包裹提供的收件、分拣、派送服务。  　　纳税人为出口货物提供收派服务，免税销售额为其向寄件人收取的全部价款和价外费用。  　　3.为出口货物提供的保险服务，包括出口货物保险和出口信用保险。  　　（十）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电信服务。  纳税人向境外单位或者个人提供的电信服务，通过境外电信单位结算费用的，服务接受方为境外电信单位，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电信服务。  　　（十一）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知识产权服务。  　　服务实际接受方为境内单位或者个人的知识产权服务，不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知识产权服务。  　　（十二）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物流辅助服务（仓储服务、收派服务除外）。  　　境外单位从事国际运输和港澳台运输业务经停我国机场、码头、车站、领空、内河、海域时，纳税人向其提供的航空地面服务、港口码头服务、货运客运站场服务、打捞救助服务、装卸搬运服务，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物流辅助服务。  　　（十三）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鉴证咨询服务。  　　下列情形不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鉴证咨询服务：  　　1.服务的实际接受方为境内单位或者个人。  　　2.对境内的货物或不动产进行的认证服务、鉴证服务和咨询服务。  　　（十四）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专业技术服务。  　　下列情形不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专业技术服务：  　　1.服务的实际接受方为境内单位或者个人。  　　2.对境内的天气情况、地震情况、海洋情况、环境和生态情况进行的气象服务、地震服务、海洋服务、环境和生态监测服务。  　　3.为境内的地形地貌、地质构造、水文、矿藏等进行的测绘服务。  　　4.为境内的城、乡、镇提供的城市规划服务。  　　（十五）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商务辅助服务。  　　1.纳税人向境外单位提供的代理报关服务和货物运输代理服务，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代理报关服务和货物运输代理服务。  　　2.纳税人向境外单位提供的外派海员服务，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人力资源服务。外派海员服务，是指境内单位派出属于本单位员工的海员，为境外单位在境外提供的船舶驾驶和船舶管理等服务。  　　3.纳税人以对外劳务合作方式，向境外单位提供的完全在境外发生的人力资源服务，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人力资源服务。对外劳务合作，是指境内单位与境外单位签订劳务合作合同，按照合同约定组织和协助中国公民赴境外工作的活动。  　　4.下列情形不属于完全在境外消费的商务辅助服务：  　　（1）服务的实际接受方为境内单位或者个人。  　　（2）对境内不动产的投资与资产管理服务、物业管理服务、房地产中介服务。  　　（3）拍卖境内货物或不动产过程中提供的经纪代理服务。  　　（4）为境内货物或不动产的物权纠纷提供的法律代理服务。  　　（5）为境内货物或不动产提供的安全保护服务。  　　（十六）向境外单位销售的广告投放地在境外的广告服务。  　　广告投放地在境外的广告服务，是指为在境外发布的广告提供的广告服务。  　　（十七）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无形资产（技术除外）。  　　下列情形不属于向境外单位销售的完全在境外消费的无形资产：  　　1.无形资产未完全在境外使用。  　　2.所转让的自然资源使用权与境内自然资源相关。  　　3.所转让的基础设施资产经营权、公共事业特许权与境内货物或不动产相关。  　　4.向境外单位转让在境内销售货物、应税劳务、服务、无形资产或不动产的配额、经营权、经销权、分销权、代理权。  　　（十八）为境外单位之间的货币资金融通及其他金融业务提供的直接收费金融服务，且该服务与境内的货物、无形资产和不动产无关。  　　为境外单位之间、境外单位和个人之间的外币、人民币资金往来提供的资金清算、资金结算、金融支付、账户管理服务，属于为境外单位之间的货币资金融通及其他金融业务提供的直接收费金融服务。  　　（十九）属于以下情形的国际运输服务：  　　1.以无运输工具承运方式提供的国际运输服务。  　　2.以水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国际船舶运输经营许可证》的。  　　3.以公路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证》或者《国际汽车运输行车许可证》，或者《道路运输经营许可证》的经营范围未包括“国际运输”的。  　　4.以航空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取得《公共航空运输企业经营许可证》，或者其经营范围未包括“国际航空客货邮运输业务”的。  　　5.以航空运输方式提供国际运输服务但未持有《通用航空经营许可证》，或者其经营范围未包括“公务飞行”的。  　　（二十）符合零税率政策但适用简易计税方法或声明放弃适用零税率选择免税的下列应税行为：  　　1.国际运输服务。  　　2.航天运输服务。  　　3.向境外单位提供的完全在境外消费的下列服务：  　　（1）研发服务；  　　（2）合同能源管理服务；  　　（3）设计服务；  　　（4）广播影视节目(作品)的制作和发行服务；  　　（5）软件服务；  　　（6）电路设计及测试服务；  　　（7）信息系统服务；  　　（8）业务流程管理服务；  　　（9）离岸服务外包业务。  　　4.向境外单位转让完全在境外消费的技术。  　　第三条 纳税人向国内海关特殊监管区域内的单位或者个人销售服务、无形资产，不属于跨境应税行为，应照章征收增值税。  　　第四条 2016年4月30日前签订的合同，符合《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将铁路运输和邮政业纳入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的通知》（财税〔2013〕106号）附件4和《财政部 国家税务总局关于影视等出口服务适用增值税零税率政策的通知》（财税〔2015〕118号）规定的免税政策条件的，在合同到期前可以继续享受免税政策。  　　第五条 纳税人发生本办法第二条所列跨境应税行为，除第（九）项、第（二十）项外，必须签订跨境销售服务或无形资产书面合同。否则，不予免征增值税。  　　纳税人向外国航空运输企业提供空中飞行管理服务，以中国民用航空局下发的航班计划或者中国民用航空局清算中心临时来华飞行记录，为跨境销售服务书面合同。  　　纳税人向外国航空运输企业提供物流辅助服务（除空中飞行管理服务外），与经中国民用航空局批准设立的外国航空运输企业常驻代表机构签订的书面合同，属于与服务接受方签订跨境销售服务书面合同。外国航空运输企业临时来华飞行，未签订跨境服务书面合同的，以中国民用航空局清算中心临时来华飞行记录为跨境销售服务书面合同。  　　施工地点在境外的工程项目，工程分包方应提供工程项目在境外的证明、与发包方签订的建筑合同原件及复印件等资料，作为跨境销售服务书面合同。  　　第六条 纳税人向境外单位销售服务或无形资产，按本办法规定免征增值税的，该项销售服务或无形资产的全部收入应从境外取得，否则，不予免征增值税。  下列情形视同从境外取得收入：  　　（一）纳税人向外国航空运输企业提供物流辅助服务，从中国民用航空局清算中心、中国航空结算有限责任公司或者经中国民用航空局批准设立的外国航空运输企业常驻代表机构取得的收入。  　　（二）纳税人与境外关联单位发生跨境应税行为，从境内第三方结算公司取得的收入。上述所称第三方结算公司，是指承担跨国企业集团内部成员单位资金集中运营管理职能的资金结算公司，包括财务公司、资金池、资金结算中心等。  　　（三）纳税人向外国船舶运输企业提供物流辅助服务，通过外国船舶运输企业指定的境内代理公司结算取得的收入。  　　（四）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情形。  第七条 纳税人发生跨境应税行为免征增值税的，应单独核算跨境应税行为的销售额，准确计算不得抵扣的进项税额，其免税收入不得开具增值税专用发票。  　　纳税人为出口货物提供收派服务，按照下列公式计算不得抵扣的进项税额：  　　不得抵扣的进项税额＝当期无法划分的全部进项税额×（当期简易计税方法计税项目销售额+免征增值税项目销售额-为出口货物提供收派服务支付给境外合作方的费用）÷当期全部销售额  第八条 纳税人发生免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除提供第二条第（二十）项所列服务外，应在首次享受免税的纳税申报期内或在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规定的申报征期后的其他期限内，到主管税务机关办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手续，同时提交以下备案材料：  　　（一）《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表》（附件1）；  　　（二）本办法第五条规定的跨境销售服务或无形资产的合同原件及复印件；  　　（三）提供本办法第二条第（一）项至第（八）项和第（十六）项服务，应提交服务地点在境外的证明材料原件及复印件；  　　（四）提供本办法第二条规定的国际运输服务，应提交实际发生相关业务的证明材料；  　　（五）向境外单位销售服务或无形资产，应提交服务或无形资产购买方的机构所在地在境外的证明材料；  　　（六）国家税务总局规定的其他资料。  第九条 纳税人发生第二条第（二十）项所列应税行为的，应在首次享受免税的纳税申报期内或在各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国家税务局规定的申报征期后的其他期限内，到主管税务机关办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手续，同时提交以下备案材料：  　　（一）已向办理增值税免抵退税或免退税的主管税务机关备案的《放弃适用增值税零税率声明》（附件2）；  （二）该项应税行为享受零税率到主管税务机关办理增值税免抵退税或免退税申报时需报送的材料和原始凭证。  第十条 按照本办法第八条规定提交备案的跨境销售服务或无形资产合同原件为外文的，应提供中文翻译件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  纳税人无法提供本办法第八条规定的境外资料原件的，可只提供复印件，注明“复印件与原件一致”字样，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境外资料原件为外文的，应提供中文翻译件并由法定代表人（负责人）签字或者单位盖章。  主管税务机关对提交的境外证明材料有明显疑义的，可以要求纳税人提供境外公证部门出具的证明材料。  　　第十一条 纳税人办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手续时，主管税务机关应当根据以下情况分别做出处理：  　　（一）备案材料存在错误的，应当告知并允许纳税人更正。  　　（二）备案材料不齐全或者不符合规定形式的，应当场一次性告知纳税人补正。  （三）备案材料齐全、符合规定形式的，或者纳税人按照税务机关的要求提交全部补正备案材料的，应当受理纳税人的备案，并将有关资料原件退还纳税人。  （四）按照税务机关的要求补正后的备案材料仍不符合本办法第八、九、十条规定的，应当对纳税人的本次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不予受理，并将所有报送材料退还纳税人。  　　第十二条 主管税务机关受理或者不予受理纳税人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应当出具加盖本机关专用印章和注明日期的书面凭证。  第十三条 原签订的跨境销售服务或无形资产合同发生变更，或者跨境销售服务或无形资产的有关情况发生变化，变化后仍属于本办法第二条规定的免税范围的，纳税人应向主管税务机关重新办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手续。  第十四条 纳税人应当完整保存本办法第八、九、十条要求的各项材料。纳税人在税务机关后续管理中不能提供上述材料的，不得享受本办法规定的免税政策，对已享受的减免税款应予补缴，并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处理。  第十五条 纳税人发生跨境应税行为享受免税的，应当按规定进行纳税申报。纳税人享受免税到期或实际经营情况不再符合本办法规定的免税条件的，应当停止享受免税，并按照规定申报纳税。  　　第十六条 纳税人发生实际经营情况不符合本办法规定的免税条件、采用欺骗手段获取免税、或者享受减免税条件发生变化未及时向税务机关报告，以及未按照本办法规定履行相关程序自行减免税的，税务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有关规定予以处理。  　　第十七条 税务机关应高度重视跨境应税行为增值税免税管理工作，针对纳税人的备案材料，采取案头分析、日常检查、重点稽查等方式，加强对纳税人业务真实性的核实，发现问题的，按照现行有关规定处理。  　　第十八条 纳税人发生的与香港、澳门、台湾有关的应税行为，参照本办法执行。  　　第十九条 本办法自2016年5月1日起施行。此前，纳税人发生符合本办法第四条规定的免税跨境应税行为，已办理免税备案手续的，不再重新办理免税备案手续。纳税人发生符合本办法第二条和第四条规定的免税跨境应税行为，未办理免税备案手续但已进行免税申报的，按照本办法规定补办备案手续；未进行免税申报的，按照本办法规定办理跨境服务备案手续后，可以申请退还已缴税款或者抵减以后的应纳税额；已开具增值税专用发票的，应将全部联次追回后方可办理跨境应税行为免税备案手续。 |